

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. 12. 6 선고 2018가단1072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9. 11. 8.

판결 선고 2019. 12. 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93. 4. 20. 접수 제422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(자백간주판결)

판사양성욱

별지